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0
----------	----

2022. 9. 28.(수)  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9월 5일

나. 발 의 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제403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
(2022년 9월 20일 상정의결)
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의영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의 수정(안 제2조)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(안 제4조)
- 인용된 조례 명칭을 바르게 수정(안 제5조, 안 제6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#### 가. 제출배경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조례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맞도록 정비하고, 조례에 인용된 법령 및 조례의 명칭을 바르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2조는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법령문의 간결한 표현을 위해 약칭을 사용하여 정비함
- 안 제4조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(2021. 12. 30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함
- 안 제5조와 제6조는 이 조례에서 인용된 조례의 명칭을 수정한 것으로 잘못 표기된 조례명을 바로 잡음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은 당연함
- 또한, 중복되는 표현을 피하고, 정확한 관련 근거 제시와 명확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충청북도의 입법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#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공공기관”이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및 소속 행정기관,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,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를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6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“공공기관”이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및 소속 행정기관,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,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공공기관”이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및 소속 행정기관,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,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.</u></p>
<p>제4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.</p> <p>1. <u>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</u></p>	<p>제4조(적용대상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6조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지원 사항) ① 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경우에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 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</p>	<p>제5조(지원 사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 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-----</p>
<p>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 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p>	<p>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-----.</p>

# 관계 법령

## 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제6조(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)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(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)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.

1.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
2.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.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.

<개정 2020.12.29.>

## □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1.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
2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
3. 공장용지 임대사업자
4.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
5. 시장정비사업자
6. 체인사업자 직·가맹점
7. 상점가진흥조합·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
8. ~ 14. (이하 생략)